



희망의 새시어 국세청이 열어가겠습니다.

보도참고자료 2016. 6. 16.(목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부서 :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
 배포일시 : 2016년 6월 16일

담당과장	한경수 과장	044) 204-3271
담당자	김진영 사무관	044) 204-3282

가구·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...

- 「가구,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, 의료용 기구, 기타 건설 자재, 안경」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
- 상기 업종 사업자는 '16. 7. 1.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%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.

1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

□ '16. 2. 17.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「가구 소매업,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 기구 소매업, 페인트·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, 안경 소매업」 등 5개 업종이 추가됨.

*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7개 → 52개로 확대

-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'16. 7. 1.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

○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함.

□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5천 명이나,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됨.

예)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.

○ 따라서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음.

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

□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(부가가치세 포함)의 50% 과태료가 부과됨.

□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,

< 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 >

구 분	가맹점 가입기한
'16. 2월 이전 개업	'16. 5. 31. * 시행령 공포일('16. 2. 17.)이 가입요건 해당일
'16. 3월 이후 개업	개업일(가입요건 해당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

○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.

<예시> 2016년 연간 신고 수입금액 3억 원, 소득세 과세표준 3천만 원인 의무발행업종 일반과세자가 '16. 12. 31. 현금 매출 1백만 원(부가가치세 제외)을 고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한 경우 1년 후('17. 12. 31.)에 경정 시 추정세액 및 과태료는 약 918천 원임.

- 추정세액 및 과태료(①+②+③) : 918,480원
 - 부가가치세 : 150,200원 …… ①
 - 매출누락 세액 : $1,000,000 \times 10\% = 100,000$ 원
 - 과소신고가산세 : $100,000 \times 40\%$ (최대) = 40,000원
 - 납부불성실 가산세 : $100,000 \times 3/10000 \times 340 = 10,200$ 원
 - 종합소득세 : 218,280원 …… ②
 - 무납부세액 : $1,000,000 \times 15\% = 150,000$ 원
 - 과소신고가산세 : $150,000 \times 40\%$ (최대) = 60,000원
 - 납부불성실 가산세 : $150,000 \times 3/10000 \times 184 = 8,280$ 원
 -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: $1,100,000 \times 50\% = 550,000$ 원 …… ③

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

-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
 -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「우편·누리집·전화·방문 접수」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,
 -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.

* 포상금 지급한도: 거래 건당 50만 원, 연간 동일인 200만 원

□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,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미발급 신고는 증가하고 있음.

- * 미발급 신고건수(건): ('13년) 2,122 → ('14년) 6,296 → ('15년) 9,651
- * 미발급 신고포상금(백만 원): ('13년) 271 → ('14년) 3,029 → ('15년) 1,897
-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2015년 포상금 지급액 감소

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

□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,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.

- * 현금영수증 발급금액(조 원): ('05년) 18.6 → ('09년) 68.7 → ('15년) 96.5

□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,

-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임.
-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.

현금영수증!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.

참고 1
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)

시행일	구분	업종	발급의무 시작일
'10.1.1.	30개 업종 신규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변호사업, 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, 법무사업, 심판변론인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 · 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일반의원, 기타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 · 일반교습학원, 예술학원, 골프장업, 장례식장, 예식장, 부동산중개업 	'10.4.1.
'10.6.8.	4개 업종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인노무사업, 일반유흥주점, 무도유흥주점, 산후조리원 	'10.7.1.
'13.10.1.	10개 업종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광숙박시설 운영업, 운전학원,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, 피부미용업,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,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(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),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,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, 의류임대업, 포장이사 운송업 	'14.1.1.
'14.2.21.	1개 업종 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선사업 	
'15.2.3.	4개 업종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 종합·전문 수리업,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, 전세버스 운송업 	'15.6.2.
'16.2.17.	5개 업종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구 소매업,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기구 소매업, 페인트·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, 안경 소매업 	'16.7.1.

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

시행일	내용
'10.4.1.	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,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(한도 : 건당 300만 원, 연간 1,500만 원) 신설
'12.2.2.	현금영수증 발급거부·미발급 신고기한 연장(1개월→5년)
'14.1.1.	전문직·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의무
'14.7.1.	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(30만 원→10만 원)
'14.7.1.	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(건당 300만 원→100만 원, 연간 1,500만 원→500만 원)
'16.1.1.	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(건당 100만 원→50만 원, 연간 500만 원→200만 원)

참고 2

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

구분	일반가맹점	의무발행가맹점
가입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상대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)을 영위하는 자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, 전문직, 병원 전체 ·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)을 영위하는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입금액 기준 없음 * 의무발행업종<소비자상대업종
발급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0만 원 이상)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- (10만 원 미만)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
과태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%(2회 이상 위반시) -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발급 금액의 5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7일이내 발급시 50% 감경 - 조세범처벌법 제15조
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발급거부가산세) 거부금액의 5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- (미가맹가산세)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가맹점과 동일, 단 상기 미발급 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
기타 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가맹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·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가맹 시 : 일반가맹점과 동일 - 상습거부자*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&거부 금액 100만 원 이상

참고 3
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

<문1>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

☞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음.

※ 대법원 판례(2015마1864, 2016. 3. 11.)

- 인터넷뱅킹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, ‘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’에 포함

<문2> 가구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 15만 원,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?

☞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.

<문3>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?

☞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,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.

예를 들어,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‘2만 원, 3만 원, 5만 원’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→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.